

# 2019년도 제2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2. 13.(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 심의위원 :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안건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회의안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00건(안건번호 제2019-161892호~제2019-161941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상기 안전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133의3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함.

다만 이미 전송중되었거나 삭제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할 것임.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61892호~161941호{‘△△△△’ 사이트의 ‘(방송)날 녹여주오(2019)’ 등 300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의견임.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면책규정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나 적극적인 조사 의무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음. 여기서 보호원의 시정권고가 반복하여 동일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내려질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실상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시정권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일 뿐 어떠한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만 실제 시정권고 과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C 위원 : 본 심의대상 안건인 300개의 복제물들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상저작물로 창작자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여 공중이 이를 감상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됨.  
이들 복제물들은 권리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임.  
또한 이들 복제물들은 수익형 온라인서비스인 웹하드에 게시됨으로써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복제 전송의 중단 및 삭제의 시정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미 삭제된 복제물의 경우는 경고의 시정권고로 충분할 것임.
  
- D 위원 : 본 심의에 상정된 50개 안건은 최근에 방송된 300개의 영상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의 전송에 대한 것이다. 대상 저작물은 인터넷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전송되고 있음이 채증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안건의 게시물은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게시자에게 저작권 법에 의해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9년 제2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13.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